검 토 보 고 서

의 안 번 호 제128호

2019. 9. 20.

건 명	논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사회적경제과)		
제안 및 제출자	논 산 시 장		2019. 9. 11.
소관위원회	산업건설위원회	회부연월일	2019. 9. 11.

보 고 내 용

□ 제안이유

O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일부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O 전통시장 인정취소에 관한 절차 수정 (안 제11조)
- O 상인회 등록의 취소 절차 규정(안 제22조의2)
- O 시장관리자 지정취소 절차규정(안 제28조의2)
- O 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의 기간, 갱신 횟수 등에 대한 내용 규정(안 제33조의2)
- O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규정(안 제39조)

□ 검토의견

○ 「지방자치법」제22조,「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의2, 제17조의2, 제38조의2, 제65조, 제68조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

검 토 보 고 서

의 안 번 호 제129호

2019. 9. 20.

건 명	2020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(사회적경제과)		
제안 및 제출자	논 산 시 장	제안연월일	2019. 9. 11.
소관위원회	산업건설위원회	회부연월일	2019. 9. 11.

보 고 내 용

□ 제안이유

- 경기불황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저금리로 신용 담보 대출을 받아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충남신용보증재 단에 출연, 특례보증을 통한 지원으로 지역상공인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,
- O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「지방재정법」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가. 특례보증 내용

- 1) 논산시
 -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지원
 - 사업 성과분석을 통하여 연차적 지원
- 2) 충남신용보증재단
 - 특례보증한도액 : 출연금의 12배까지 융자지원
 - 보증비율 : 보증금에 대한 100%, 보증수수료 : 연 1%

나. 보증조건

1) 특례보증한도액 : 소상공인 1개 업체당 1회 3천만원 이내

2) 보증기간 : 최장 5년 이내

□ 검토의견

○「지방재정법」제18조,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제7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